

201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

일시 | 2012년 10월 16일(화) 10:30~12:3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 부 일 정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

사회: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	개회 및 발표자 소개	김지연(사회자)
10:35~10:45	환영인사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0:45~11:45	발표	홍순혜 교수(서울여자대학교)
11:45~12:30	질의 응답	김지연(사회자)

목 차

■ 발표.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	1
--------------------------	---

▶ 홍순혜(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발표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

홍 순 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

1.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의 정당성

1)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1) 청소년의 성장·발달의 도모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근거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을 위한 그들 고유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인격 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가 학습권이기 때문에 이는 인권 중에서도 핵심이며 인간의 성장·발달권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권이다(황성기, 1994). 이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는 아직 미성숙하고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에게 전면적인 발달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권리가 되는 셈이다.

(2) 청소년의 삶의 질 및 행복 보장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성장·발달권 보장 이외에도 삶의 질 또는 행복권 보장이라는 측면과도 관련성이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 또는 박탈은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3) 사회적 비용의 절감

우리나라가 아직은 중학교 교육까지만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 중학교 졸업자의 거의 전부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한데 사회적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학업중단은 취업관련 지식이나 기술부족으로 이어져 이들의 사회참여 장애요소가 되며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허남순·노충래, 2005). 부모의 빈곤문제는 다시 아동의 빈곤문제로 이어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즉,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은 ‘낮은 교육 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으며(홍순혜 외, 2007) 사회복지 의존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미혼모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대두된 미국의 경우, 2002년 15~17세 사이의 십대 미혼모 가운데 10%만이 고등학교를 마쳤으며 약 80%가 복지수급 대상이 되고 이 중 75% 이상이 출산 후 5년 이내에 복지수급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한부모의 빈곤문제는 다시 아동자녀의 빈곤문제로 이어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은 미혼모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미래를 보장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막대한 사회비용의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므로¹⁾ 이들의 학업중단은 차후 자립 실패로 이어지고 사회적 부담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청소년 한부모의 특수성과 관련된 이유

① 재임신의 방지

학교는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 학생으로서의

1)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홍순혜 외, 2007) 조사에서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19세 이하의 미혼모시설 거주 미혼모 63명 중 68%(43명)가 부모가 사별, 이혼, 별거한 가족의 자녀들이었으며, 이들이 인식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어렵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가 56%, 나머지는 보통이었고 잘 산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 사례로 없었다.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혜영 외, 2009) 조사에 따르면 166명의 19세 이하 응답 미혼모 중 30.7%의 양친 중 적어도 한 명은 생존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신분을 제공하여 그 시기에 기대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하는 울타리 역할도 하고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홍순혜 외, 2007) 조사 당시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19세 이상의 청소년 한부모 63명 중 71%가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 연구의 결과와 학교 이탈이 청소년 임신의 중요 예측변수라고 지적한 김만지(2004)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재임신 방지를 위해서도 학생들을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무르게 하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건강권의 보장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학교에서 내모는 교육제도, 이들의 교육과 자녀양육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 정책, 사회적 편견은 학업지속을 원하는 임신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낙태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Roosa(1991)는 10대 산모는 생물학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협이 크고 임신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20대 산모에 비해 더 크다(윤미현·이재연, 2002에서 재인용)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이 불식되고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몰래 남의 시선을 피해 임신 및 출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자신과 태아의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권을 보장한다 함은 임신, 출산 과정에 있으면서도 그 여건에 맞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산모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태아의 건강권 보장과도 직결될 수 있다.

③ 모성보호

현재 임신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남기 위해 낙태를 선택하기도 하고 출산을 한 경우에도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기도 한다. 윤미현·이재연(2002)의 연구에 의하면, 10대 미혼 한부모의 출산 후 장래계획에서 77%가 아기를 입양시키겠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37%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36%는 맡길 임시위탁시설이 있다면 여건이 마련된 후 데려다 키우겠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미혼 한부모가 사회적 지원 부족, 경제적 어려움, 주변의 따가운 시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의 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지속을 위해 낙태나 입양을 선택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교육 및 복지 정책 하에서는 학업지속을 위해 양육을 희망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낙태나 입양을 선택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낙태는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학교에 남기 위해 낙태를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모가 미혼 청소년이라고 할 지라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학업 때문에 모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의 법적 근거²⁾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근거는 없으며³⁾ 일반 청소년의 학습권 규정에 근거해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무차별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한부모의 실제적인 학습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침해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1)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외국의 별도 법과 규정들

미국의 1972년 교육법 9조(Title IX: 1975년 7월 효력 발생)는 연방기금을 받는 학교는 단지 임신 또는 임신과 관련된 조건에 근거하여 학생을 교육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Allen-Meares, 2007).

영국의 10대 한부모 학습권도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16세 미만의 한부모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산전후에 최대 18주 동안 학교불출석을 인정해주며, 본인이 그 학교를 계속 다니길 원치 않을 경우 대안학교를 갈 수도 있으며, 가정교사학습이나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학습을 지역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Ehrlich & Vega-Matos, 2000). 또한 The Social Exclusion Unit's Report(1999)는 10대 한부모들을 교육, 취업과 훈련 등에 참여시켜 사회적 배제를 줄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 근거를 성별평등교육법에 담았다. 이 법은 학교가 임신한

2)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홍순혜 외, 2007)에서 발췌·요약함.

3) 최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안에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교육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되었으나 조례의 지역성이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임신 및 출산한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법적 근거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2004년 성별평등 교육법 14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학생이나 출산한 학생을 위해 ①교내·외 시설 구비 ②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③상담서비스 제공(2005년 성별평등교육법시행령 11항)을 포함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근거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권은 국내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이나 선언 등을 통해서도 보장받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서는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을 통해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959년 아동권리선언 제7조에서도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아동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협약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는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학교 출석률과 중퇴율 감소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3조와 4조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습을 받을 권리와 교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조건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차별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2007년도에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의 제18조의 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의 인권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학습권은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보장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되어

서는 안되며, 이의 보장을 위해 국가나 학교가 노력해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또한 앞에서 설명한 동일한 법적, 협약적 근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2.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 실태

1)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전⁴⁾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침해 실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의 하나가 2009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된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사건(09진차535)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양가부모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 한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학교는 전학 또는 휴학을 종용하였고 학교의 압력 속에 여학생 당사자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였다.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학생지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한하면서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피진정 학교가 해당 학생을 재입학시킨 후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를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학교는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절대 다수가 이에 반대하였고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 학생의 학적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를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공식 권고하고 해당 광역시 교육감에 대해서는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교육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대 한부모의 특성을 연구한 윤미현·이재연(2002)의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정도는 중학교 이하(중퇴 및 졸업)인 경우가 31.6%, 고등학교 이하(중퇴 및 졸업)가 61.5%로 나타났다. 미혼부모에 관해 포괄적 조사를 실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혜영 외, 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조사된 171명의 19세 이하 미혼모 중 26.7%가 중졸이하, 52.6%가 고등학교 재학, 휴학 또는 중퇴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문제가 심각함을

4) 아래의 내용은 홍순태 (2010).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와 지원방안”.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여성위원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공동주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공개토론회 자료집. 2010. 3.16.에서 발췌·요약함.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임신에 대한 학교 조치에 대한 응답(윤미현 · 이재연, 2002)에서, 학교에서 임신 사실을 안 경우 자퇴하라고 했다는 응답이 약 20.0%, 알아서 자퇴했다는 응답이 약 20.0% 정도로 나타났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홍순혜 외, 2007) 용역연구에서는 당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19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63명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18명이 임신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임신하여 출산 전에 성공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1명을 제외한 전원은 중퇴, 휴학, 또는 장기결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당시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18명 중 학교가 임신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6명이었는데 모두 휴학 또는 자퇴 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머지 12명은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이유를 대고 현재 휴학이나 장기결석 중이었다.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용역연구(제석봉 외, 2008)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 한부모 73명 중 임신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청소년이 43%인 31명이었으며 학교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22명이었으며 이 중 학교로부터 휴학 또는 자퇴 권고를 받은 경우는 5명, 약 23%이었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학교현장에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시국은 학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배치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 이후 학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학업지속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학업지속을 희망하였으며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서는 학업지속 의지가 강하거나 매우 강한 경우가 59%, 보통의 의지까지 합하면 96%나 되었다.

2) 201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의미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0.8.30).

- 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②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청소년의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③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한 지침 발령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① 다양한 교육형태 마련, ② 통합교육, ③ 자퇴나 휴학 강요 방지 규정마련, ④ 편견해소방안 마련이라는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① 학교생활규정, 교육부 지침, 교육기본법 등을 제·개정해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징계나 차별을 근절할 것. 또한 임신·출산시 질병결석이나 휴학처리 등 단계별 매뉴얼 제작 보급, 상담 등 미혼모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②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해 학교 내에 최소한의 휴식공간 마련, 대안학교 위탁교육 활성화, 방송통신고등학교 편입학이나 검정고시 지원, 미혼모 시설 교육기능 부여 등이 필요.

③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학습권 지원방안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취업과 의료지원은 물론 부모교육과 자녀양육교육 지원 등을 추진

④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 ‘미혼모’라는 용어 대신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는 중립적 용어 사용 방안 검토 등 사회적 편견해소 방안 마련, 성교육 강화 등 청소년 임신 및 재임신 예방 방안 마련

이전까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는 미혼모에 대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은 전무하였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주로 교육외적인 서비스나 자녀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고 교육 관련 서비스라는 것도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정도였다. 아직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결국에서 현장학교가 우선적으로 변화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기존의 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를 도와주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교육을 중단하지 않도록 개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였다.

3) 201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단행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또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교사 대상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징계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검정고지 지원, 아동 양육·의료비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정부 부처 및 교육청의 조치들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양육을 병행하는 청소년들을 교육의 장 안으로 유입시키고 이들을 자립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의 편견과 차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같은 것으로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홍순혜 외, 2007)에 따르면, 학교가 임신 사실을 알았던 6명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모두 학교가 임신 사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비난적이었으며 휴학이나 자퇴를 권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247명 중 56%인 138명이 임신 및 출산은 학교 징계 대상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74%인 185명의 교사가 임신 학생의 재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매우’ 또는 ‘약간’ 위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가 미혼모에게 휴학이나 자퇴를 권고하는 근거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징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또한 학생의 임신이나 출산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교사들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재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하거나 그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증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사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청소년 한부모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약 70%의 청소년 미혼모와 약 90%의 교사들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점이나 많은 교사들이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감소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사 및 사회 전반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고질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얼마 전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①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학생의 임신 및 출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많은 교육자들이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던 점을 기억해 볼 때 교육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과 교사의 지지 및 정보 부족

청소년 한부모들 중에는 학교가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알게 되어 자퇴나 휴학을 권고한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학교에서 쫓겨날 것으로 생각하여 학교가 알기 전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무단결석한 경우도 많았다(홍순혜 외, 2007). 2010년 이후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냈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 미혼모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지원책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여전히 낙태나 입양, 그리고 학업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 미혼모가 경험하는 정보 및 정서적 지지 부족은 영아살해와 같은 자녀의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2년 8월 한 여고생(17)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지하철역 화장실에 유기했는데, 경찰조사에서 친구나 가족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게 무서워 버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1월에도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중퇴생(17)이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3)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대안들 부족

교육욕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미혼모는 동일집단이 아니다. 이미 학업을 중단한 학생, 현재 학교에 적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학생, 다니던 학교를 임신 중과 출산 후에도 계속 다니고자 하는 학생, 임신이나 출산 후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 등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어떤 교육형태를 희망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아동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지지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느냐의 여부,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와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여건들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형태를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학습권을 보장함에 있어 기본 원칙은 모든 청소년 미혼모들이 차별없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홍순혜, 2010).

특히 원적학교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신말기와 출산기간 동안 질병결석과 같이 공식적 결석으로 인정받고 원하는 경우 휴학을 허용하는 조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양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미국이나 대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교육계 내의 동의 부족으로 인해 원적학교에서의 학습권 보장은 실현이 거의 어려운 상황에 있다.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교육대안으로서 대안위탁교육기관들이 선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실적 면에서는 부진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각 교육청을 통해 위탁교육시설, 미혼모시설 등과 연계하여 학업을 지속한 미혼모는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36명으로 총 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혼모를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이 12시도에 15개가 지정되어 있지만 광주, 대전, 전북, 제주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헤럴드경제, 2011.9.19.).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대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희망과 관계없이 학교를 자퇴하고 학업을 완전 포기하거나 검정고시 등의 방법만을 추구해야 할 지도 모른다.

(4)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과 양육을 지원하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 실질적인 조치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미흡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학습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에 대해 일반학급에서의 교육권을 보장한다함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아동의 교실 내 교육을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한다함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인권 및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심 이후 많은 지원책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하면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양육시설에 거주할 경우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심해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클 수 있으므로 임신 확인 시부터 이후 출산이나 양육까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해 주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배정이 필요하다.

3.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학습권 보장 방안

학생들이 자신의 여건들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형태를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교육권을 보장함에 있어 기본 원칙은 모든 청소년 한부모들이 차별없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여건을 마련한다 함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⁵⁾.

1) 사회적 인식의 개선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입 중의 하나가 학교 교사를 포함하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과 사회 전반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갖는 인식이 변화되어야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들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갖는 인식과 지지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도나 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교육과정을 통해 유도할 수도 있으며 공개적 사회적 논의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5) 아래에 제시된 방안들은 국가인권위원회(홍순혜 외, 2007)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일부 수정한 것이다.

- 교사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
- 청소년 한부모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2)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와 조치에 대한 변화

학생들이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현장의 태도와 조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교 이탈을 막는 동시에 학년 지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휴학으로 인해 학년이 지체되면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이 야기될 수 있고 학업지속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학습권 보장은 학교에 적을 두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나이에 맞는 진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기본법 등을 개정하거나 교육부 지침을 발령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방안들에서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학교 징계 및 차별 근절
-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학업결손에 대해 질병결석 처리
- 임신이나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휴학 허용

특히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질병결석 처리 및 휴학 허용 등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임신부 및 태아에 대한 건강권의 보장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학교 내에서 임신, 출산한 학생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 상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전문가 배치도 필요하다.

3) 청소년 한부모에게 적절한 교육적 대안들의 확충 및 교육내용의 정비

대안학교나 임신 및 산후조리 기간에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위탁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대안위탁교육기관들이 여러 지정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며, 필요한 정규교과과정 내용의 일부뿐만 아니라 산전, 산후교육, 아동양육 방법, 직업교육 등 청소년 한부모들의 상황과 욕구에 적합한 내용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미혼모 학생들이 학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대안학교 마련도 필요하며

이 곳에서 전문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확충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아동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혼모 학생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만 한다고 해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아동양육 문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취업지원, 심리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홍순혜, 2010).

- 한부모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에 따르는 생계비,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확대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초·중등교육 과정을 끝낼 때까지 시설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미혼모 시설 확충 및 시설 내 서비스 확대
- 청소년 한부모의 욕구를 반영한 취업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녀양육 및 부모역할 교육 지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우선권 부여 및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 학교 졸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졸업장 취득 시 자립지원금 지원 등
- 방문지도교사제를 활용하여 학습지원
- 지역사회 기관들 내에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서비스 신설
- 멘토링 프로그램(학습멘토링 등)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지원 :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을 지지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 가정복귀가 가능하도록 유도
-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5) one-stop 보호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제공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런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관리해 주는 사례관리의 제공이 시급하다.

- 학교, 미혼모 시설, 병원, 입양기관, 보육시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묶어 주는 one-stop 종합보호체계 구축
-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종합적 보호체제로 들어가는 one-stop 창구의 역할을 하는 기구 구축
- one-stop 기구를 통해 사례관리 실시
- 학교 현장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 종합보호체계를 활용하여 임신 및 출산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

많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임신 및 출산 이후에 원가족으로부터 거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결정하고 실행하기 힘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가족의 지원이 없다는 것이 청소년 한부모들을 한층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신에 대한 자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청소년 한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연결하고 모니터링하여 학업도 지속하고 희망시 양육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의 발견 이후 자립시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사례관리전문가의 배치를 제안한다. 이들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하거나 양육을 병행할 때 필요한 모든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6) 효과적인 임신·재임신 예방 교육 실시

청소년의 임신 및 재임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미혼 청소년들 중에 2회 이상의 임신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학업지속과 자립을 위해서는 재임신 예방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를: 교과부 등 3개 부처에
징계 아닌 보호와 지원 방안 마련 권고. 2010.8.30.
- 김만지. 2004.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5(2): 5-25.
- 김혜영 · 선보영 · 김은영 · 정재훈.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제석봉 · 석창훈 · 차명진 · 이해정 · 윤효정. 2008.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학
기술부.
- 윤현미 · 이재연. 2002.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49-169.
- 허남순 · 노충래. 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홍순혜 · 김혜래 · 이해원 · 변귀연 · 정재훈 · 이상희. 2007.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홍순혜. 2010.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와 지원방안”.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여성
위원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공동주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공개토론회
자료집. 2010. 3.16.
- 황성기. 1994.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헤럴드경제. 2011.9.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10919000932&md=20120317115903_AE.
- Allen-Mears, Paula. 2007. Social Work Services in Schools. Allyn and Bacon.

MEMO

MEMO

세미나자료집 12-S45

201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

인 쇄 2012년 10월 15일

발 행 2012년 10월 1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